

#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, 시행규칙 제106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78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「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
(기관별 별도 통보)
2. 평가자 :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
3. 평가대상업무 : 평가 실시계획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업무  
(2015.5.1.~2017.4.30.)

※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

4. 평가방법 : 기관별 방문평가
5. 평가표 : 붙임 참조
6. 평가일정

- 평가실시 : 2017.6.1.(목) ~ 9.29.(금) 중 1~2일

※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,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

- 평가결과(절대점수) 통보 : 2017. 10월 중

-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2017. 10월 ~ 11월 중

※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

- 최종 평가결과 공표 : 2017. 12월 중
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(052-7030-640, 639)에게 문의

2017년 5월 1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